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34563, 2013다34570(병합), 2013다34587(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34563, 2013다34570(병합), 2013다3458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선고 2012나26628, 2012나26635(병합), 2012나26642(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889, 258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안주공1.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인천광역시 남구

판결 선고2017. 4. 13.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선고 2012나26628, 2012나26635(병합),
2012나26642(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률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을 위반하거나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참조).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공공청사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 내지 7호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서 정하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2) 원심 판시 이 사건 공공청사의 대지가액과 건축비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거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설치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을,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새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축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4항 제1호·제12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6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축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계 행정청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공문을 주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조건 6, 9, 10, 11항이 이 사건 도로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거나 그러한 취지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계획상 피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토지가액 및 설치공사비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봐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과 도로, 차도, 보도, 완화차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등 및 부대 전기시설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계획에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반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도로가 피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부속물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 원고가 설치하였다는 상수도관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피고 등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반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비상급수시설은 수질오염, 수원 고갈 등 유사시 인근 주민들에게 수자원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시설이 방화설비 또는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비상급수시설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라) 그 각 설치비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거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설치한 공공하수관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것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공하수관 설치비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가치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